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. 2. 25 선고 2015가단646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2. 4.

판결 선고 2016. 2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685㎡ 중 별지 도면(감정도) 표시 중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78㎡ 지상 강파이프구조 동물 및식물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위 토지 78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김제시 C 전 68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한 김제시 D 목장용지 2418㎡의 소유자이다. 피고는 위 목장용지지상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(감정도) 표시 중 1, 2, 3, 4, 5, 6, 7,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78㎡ 지상에 강파이프구조 마스터강판, 썬라이트지붕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(이하 '이 사건 축사'라 한다)를 소유하여, 위 선내 (가)부분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, 이 사건 축사 중 이 사건 토지중 위 선내 (가) 부분 78㎡ 지상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, 위 선내 (가) 부분 78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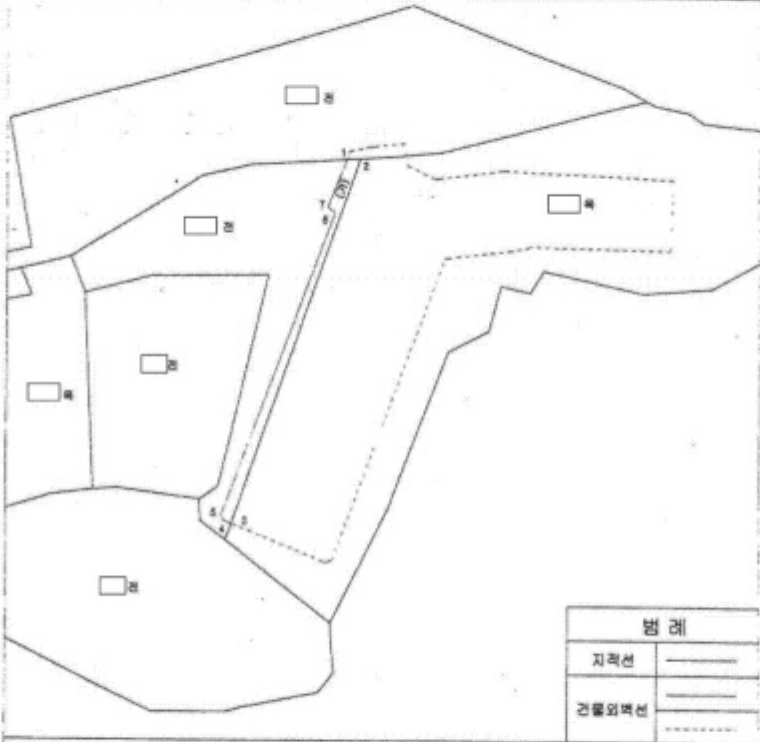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차성안

도면(감정도)

감 정 도

토 지 소 재 김제시 1 밀



범 례	
지적선	—————
건물외곽선	—————

토 지					
지 번	지목	부호	내 용	면적(㎡)	비고
□	전	가	1, 2, 3, 4, 5, 6, 7, 1	78	건물

비 고	본 감정도에는 축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